

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

제정 2019. 10. 28 규칙 제154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 규칙 중 인용된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예산성과금운영에관한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예산성과금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으로, “제33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”을 “제54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영 제33조의3제1항”을 “영 제54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양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”를 “「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·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9조제2항”을 “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